

제 호

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

명 칭

대표자 성명

위 법인을 「항만법」 제35조 및 「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」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
또는 특별자치도지사

작 인